

의안 번호	1341	【울산광역시 중구 성실·모범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】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7. 5. 3.(수), 이복희 의원 외 9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7. 5. 8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7. 5. 15.(월)

2. 제정이유

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·지원함으로써,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성실·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명시(안 제2조, 제3조)

1) 공통사항

- 선정기준일 : 해마다 1월 1일
- 중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·법인

2) 성실납세자 :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구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

3) 모범납세자 :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2천만원 이상,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세자 중에서 최근 3년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

나. 성실·모범납세자 선정 방법 등(안 제4조)

다. 성실·모범납세자의 우대·지원 사항(안 제5조)

1)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

2) 「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제4항제5호

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

3)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

4)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

라. 사후관리 및 우대·지원 취소 등(안 제6조)

4. 근거법규

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8조

나.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다. 「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6조제4항제5호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거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·지원함으로써,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38조에 따른 위임 조례로 조례 제정의 근거가 성립되며,
-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표창 및 주차요금 면제 등 행정적·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납세의식을 높임으로써 자주재원 확보 및 세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
-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,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